

[별지 제20호의11서식] <신설 2010.4.26>

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·폐지 신고서					처리기간
					7일
신고인	성명 (대표자)		법인명 (법인등록번호)		
	주 소			전화번호	
기관명칭			신고번호		
소재지					
휴지·폐지 예정일	휴지일자	년 월 일 ~ 년 월 일까지			
	폐지일자	년 월 일			
휴지·폐지사유					
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9조의1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시설을 (☐휴지, ☐폐지)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시·도지사 귀하					
구비서류	1.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(법인만 해당한다) 1부 2.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.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원본(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				수수료
					없음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